

교직원 표창규정

제정 : 1995.03.01

개정 : 2001.03.01

개정 : 2014.07.01

개정 :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① 표창대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01.>

1. 장기근속자
2. 헌신적인 봉사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탁월한 자

②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본 대학교 학교법인 민송학원 산하 교육기관 및 수익사업체에서 전임교직원으로서 중단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1. 12. 0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휴직기간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의 휴직기간 <개정 2014. 07. 01>

③ 제2항 이외의 기타 휴직기간은 2분의 1의 비율로 근속기간에 통산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④ 임시직으로 임용된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01.>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 및 간사는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5조(공적조서 회부) 총장은 표창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표창 및 부상) 표창은 표창장을 수여하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01.>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제9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